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급수단의 정의에 스테이블코인 추가〉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38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급수단의 정의에 스테이블코인 추가(안 제3조제1항)	2
[참 고]	1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0. 28.

다. 회 부 일 : 2025. 10.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용 대상을 외국환, 외국환거래 및 이와 관련되는 행위, 국경 간 거래·지급·수령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거래·지급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음. 특히,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지급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통화와는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동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항제3호).

Ⅲ. 검토의견

1. 지급수단의 정의에 스테이블코인 추가(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 정의(제3조) - 지급수단(제3호) · 정부지폐 · 은행권 · 주화 · 수표 · 우편환 · 신용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신설> - 대외지급수단(제4호):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 외국환(제13호):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	○ 정의(제3조) - 지급수단(제3호) · 정부지폐 · 은행권 · 주화 · 수표 · 우편환 · 신용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u>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함) 중 단일한 종류의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의 정의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현행법¹⁾은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급수단”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대외지급수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임.

또한, 동 법의 적용범위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7. “증권”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9.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외화파생상품”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11. “채권”이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貸借) 등으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2.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3.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함)” 및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한편, 2010년대부터 가상자산의 등장과 핀테크 기반의 외환서비스 도입으로 국경 간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전통적 방식인 은행을 통한 국경 간 거래보다 가상자산·핀테크 방식 등 대안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²⁾.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적발된 외환범죄 금액 11조원 중 가상자산과 관련된 금액은 9조원으로 전체 외환범죄 금액의 81.3%를 차지하고 있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업자가 엄격한 확인 절차 없이 마약 구매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적발³⁾되기도 함.

이에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외국환에 포섭하여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과 동일하게 규제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⁴⁾ 중 단일한 종류

2) [참고 1] 참조

3) 동아일보, ‘피싱-도박 조직에 가상계좌 7만개 넘겨 11억 부당 이익’, 2024. 8. 21.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지급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달러 등 외국통화로 표시된 스테이블코인과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대외지급수단’에 포함되어, ‘외국환’으로서 규제를 받게 됨.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야 하고(법 제8조)⁵⁾, 지급 또는 수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법 제15조)⁶⁾, 재정경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과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 「외국환거래법」

제15조(지급절차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

재무장관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신고하게 할 수 있음(법 제17조)⁷⁾. 그리고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한 자료를 보고받아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통한 자금의 국경간 거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됨(법 제25조).⁸⁾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취지는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⁹⁾. 동 법의 적용 대상은 외국환, 외국환거래 및 이와 관련되는 행위, 국경 간 거래·지급·수령 등으로 그 적용 범위를

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8) 「외국환거래법」

제25조(사무처리 등)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9)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적절한 외환거래 조정과 관리’를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구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관리’하는 것을 목적 조항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1999년 현행법 제정 시 삭제됨.

‘외국환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외거래성을 가진 거래’로 정하고 있음.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대외거래에서 채권·채무의 결제 등을 위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용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¹⁰⁾¹¹⁾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지급수단으로서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정부지폐·은행권 등과 동일하게 지급수단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가상자산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기본법 성격을 갖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규정(법 제10조¹²⁾),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10) 이상복, 외국환거래법, 박영사, 2023. 3., 16면

1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460 판결(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그것에 표시된 금액 상당을 카지노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증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규정(법 제11조¹³⁾),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규정(제12조¹⁴)을 두는 등 가상자산을 지급수단이 아닌 투자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짝 후 매매를 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짝 후 매매를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⑤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

1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1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음.

둘째,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규정하는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매매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로 취급되어 스테이블코인 매매 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생김에 따라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는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가 포함됨(법 제3조제19호가목)¹⁵⁾.

즉, 스테이블코인이 대외지급수단에 추가되면 스테이블코인의 매매계약은 ‘자본거래’에 해당됨. 그런데 「외국환거래법」은 자본거래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1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나. 증권의 발행·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다.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 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⁶⁾¹⁷⁾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연간 누계 지급금액이 10만불(약 1억 4,000만원)¹⁸⁾ 이하인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초과한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신고대상에 포함될 것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해 신고의무 등이 생기면 거래가 위축되어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산업의 성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¹⁹⁾

셋째,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²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에서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16)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申告受理)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7)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거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소액 자본거래, 해외에서 체재 중인 자의 비거주자와의 예금거래, 추가적인 자금유출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변경 등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거래,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등은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시행령 제32조제2항)

18) 환율 1,400원/달러 적용

19) 단, 정부에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면 개인 간의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스테이블코인 매매에 대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음

20)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 전반을 규율한 업권법으로,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은 지난 2024년 7월에 시행된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반면, 2단계 법안은 시장 규율 체계를 다룰 예정임

현재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규제·지배구조 등을 포함하여 사업자 및 가상자산 발행·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가상자산 2단계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고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음.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법률안 발의 현황]

의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소관위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민병덕의원	2025-06-11	정무 위원회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의원	2025-07-28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안도걸의원	2025-07-28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의원	2025-08-21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의원	2025-09-22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김재섭의원	2025-09-25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최보윤의원	2025-10-01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의원	2025-11-2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2025-12-15	

스테이블코인이 외국환의 범위에 추가되면 ‘외국환업무’에 해당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매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업무를 하려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야 함.²¹⁾

2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완료되지 않아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환거래법」을 통해 등록의무와 진입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하면, 스테이블코인 산업 내 기업의 신규투자 및 진입이 위축될 수 있음.

특히,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요건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스테이블코인의 매매 및 매매중개 등을 하려는 사업자의 등록 및 인가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될 여지가 있음.

일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법률안은 명시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은 스테이블코인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외국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되, 「외국환거래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²²⁾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6의2. “외국환중개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김재섭의원 대표발의)은 스테이블코인의 지급 또는 수령에 대해서는 통화가치의 안정 및 그 밖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²³⁾

「외국환거래법」에서 먼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 이후에 기본법 성격을 갖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정의가 다르게 규정되면, 법률간 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규제 적용 대상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²⁴⁾

22)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제18조(법적 관계)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외국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제1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의 발행행위 또는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을 취급하는 디지털자산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지급 또는 수령에 대해서는 통화가치의 안정 및 그 밖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4)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국경간 거래에 대한 절차법인 「외국환거래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먼저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경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및 지급·수령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 부재로 기존 거래가 금지·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u><신설></u> 4. ~ 20. (생략) ② (생략)	제3조(정의)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중 단일한 종류의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 4. ~ 2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48

참고 1

가상자산 활용 불법거래 사례 (자료 : 재정경제부)

I. 조세탈루

※ 관세청은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점 악용한 사례 증가

- ☐ '21.4~'22.8월 홍콩 등에 금, 귀금속 등을 중계무역 수출하고 대금(2,039억원 상당)을 대표의 개인지갑에 가상자산으로 수령
- ☐ 구리스크랩을 밀수출하거나, 저가의 철스크랩으로 수출단가를 낮춰 신고, 차액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업자를 통해 수령
* 밀수출 998억원, 가격조작 3,743억원, 법인세 탈루 700억원 상당

II. 범죄악용

※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알기 어려워 범죄사실 확인·특정에 어려움

- ☐ 해외 원정 도박꾼들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를 영수한 후 가상자산(테더)을 해외로 전송하여 현지에서 외화로 전환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160억원 상당의 해외 도박자금을 불법 환치지
* ①국내 영업책은 SNS로 '코인 환전' 홍보, 해외 원정도박 고객 모집해 원화 영수
②가상자산 조달책은 국내 영업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즉시 국내에서 확보한 가상자산 테더를 외국에 상주하고 있는 해외 영업책에게 전송
③해외 영업책은 전달받은 가상자산을 현지 카지노 등에서 외화로 환전해 고객에 전달
- ☐ 국내 담배 밀수입 조직이 베트남으로부터 담배 158만갑(원가 29억원 상당)을 밀수입하면서,
 - 국내 거래소에서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입해 베트남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입대금 지급
- ☐ A는 국내 마약 공급책으로 자금세탁원인 B명과의 해외 거래소에 개설된 지갑주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마약대금을 수금
 - B는 수금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34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을 자금세탁

1 유럽연합

- 기본법에 해당하는 「**EU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R)**」 법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분류와 규율 도입
 - 단일 법정통화에 연계된 경우에만 지급결제 수단으로 허용
 - 금융안정성에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은 시스템 전자화폐(**Significant EMT**)라고 규정, EBA(European Banking Authority)에 감독 권한 부여
 - * (EMT) E-Money Token, 하나의 특정 법정통화에 연계시킨 스테이블코인 (ART) Asset-Referenced Token, 복수의 법정통화를 포함, 자산집합의 가치에 연계
- 또한, 국경간 거래에 대한 규정인 「**TFR***」을 별도 제정하여, '25.1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트래블 룰(traveul rule) 적용
 - 가상자산 사업자는 전송인 및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여 제출 의무
 - * Transfer of Funds Regulation

2 영 국

- '24년 재무부·영란은행·금융감독청(FCA)가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을 마련·발표하고 의견수렴 중
 - 하나 또는 복수의 법정통화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Fiat-Based Stablecoin)만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규제대상으로 편입
 - * "금융서비스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금융기술이 핀테크와 연계하여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 내) 영국 내에서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을 **Regulated Stablecoin**이라고 명명
 - (해 외) 금융감독청이 인가한 해외결제 대행업자가 영국 국내법에 따라 발행한 코인은 **Approved Stablecoin**이라고 명명

- 외국 스테이블코인이 **외환거래에** 사용될 경우 금융 안정성을 위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한 있음
 - * 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GBP로 변환하는 거래는 외환거래(환전)으로 간주
 - ※ 해외 발행자는 영국에서 운영시 영국의 라이선스 및 AML 규정 준수 필요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감독청이 아닌 영란은행이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감안하여 건전성 감독 수행**

3 미 국

- 단일법령이나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되는 **별도법령은 없으며**, 재무부(**OFAC***, **FinCEN***), **FRB**, **SEC** 등 연방기관 연합을 통해 감독
- (**FinCEN**) 「**은행비밀보호법(BSA)**」에 의거하여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간 거래 감독 수행
 - 국경간 송금이나 스테이블코인과 화폐간 전환에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자는 BSA에 따라 송금업체로 간주
 - 스테이블코인이 한 통화에서 다른 통화로 변환시 외환거래로 간주하며, 외환거래나 국경간 송금을 수행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거래소는 **FinCEN에 MSB***로 등록 필요
 - * Money Services Business: 1일 기준 인당 1천불 이상의 화폐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환전, 수표·여행자수표 추심, 송금수표(money order) 판매 등 포함
 - 해외 발행자도 **FinCEN에 MSB로** 등록하고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미국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거래 차단 가능
- (**OFAC**)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미국 제재 준수여부**를 감독하며, 특히 제재 우회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조사·적발 강화
 - *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는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재 대상과의 거래 지원 혐의로 조사·처벌 (Bittrex 사례 등)
 - 또한, **미국인이 DeFi 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경우 미국 제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침 발표

4 일 본

- 「외국환 및 대외무역법(FEFTA)」, 「결제서비스법」 등을 통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외화 거래에 준하여 규율
 - ※ 다만, 일본은 외환자유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로서, 외환법령상 자본거래 등을 “필요시 제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평시 규제는 사실상 없는 상황
-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하는 회사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국경간 환전 또는 송금 사업에 참여하려면 해당 라이선스 필요
 - 특히, 일본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자신의 코인이 일본인 관련 결제·송금에 사용시 일본의 외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감독 및 보고의무 부과
 - 일본인이 스테이블코인을 외화로 변환시 외환거래로 간주
- 스테이블코인을 양도하는 거래자에 대하여 거래성격·가액·거래 상대방 등을 재무부 또는 금융청(FSA)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음
 -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통해 자본의 급속한 이동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변동성이 심각한 경우 자본통제에 준하는 규제 대상

5 싱가포르

- 스테이블코인이 외환과 관련된 국경간 결제 또는 송금에 사용되는 경우 「지불서비스법(PSA)」와 기타 통화청(MAS) 지침 적용
- USD 또는 EUR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의 국경간 거래는 외환거래로 간주하여 MAS의 규제대상에 포함
 -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또는 송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싱가포르 외환규정 적용되며, 해외 발행자는 필요시 MAS 보고
 - ※ 금융안정성을 위반할 수준의 대규모 국경간 자본이동은 MAS 승인·감독 대상
- 국경간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PSA에 따라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며, 외환거래 관련 MAS 규정 준수 의무 보유